

검 토 보 고

1997. 9. 24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7년 9월 12일 제출
- 회 부 : 1997년 9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‘95.12.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(시행령 ’96.7.13, 시행규칙 ’97.2.14) 전면개정 공포시행 됨에따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,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 고자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‘97~’98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보건소 업무의 '96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 및 '97~'98년도 사업 추진계획
 - 영유아, 학생, 성인, 모성, 노인, 구강, 정신보건사업
 - 급·만성전염병 관리, 만성퇴행성질환 관리, 의·약무 관리

-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
 - 7개 보건소 신·증축 및 개보수 80억 85백만원
 - 18개 보건지소 신·증축 50억 64백만원
 - 6개 보건진료소 증축 7억 23백만원

- 도 특수사업 추진
 - 독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1개소
 - 보건소 한방진료실 지속운영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10개소 확대 설치
 - 이동순회진료 활성화 및 가정간호사 양성 확대
 -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확대 (자궁암, 유방암 등)

5. 검토의견

-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검토한 바,
 - 지역보건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'97~'98, 2개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
 - 지역보건기관의 지속적 확충과 물리치료실 등 도 특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 -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중 지역주민 참여확대,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기능분담,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제반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